

「식품위생법」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

「식품위생법」 제41조(식품위생교육)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(과태료)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.

2026년 7월 7일

고령군



- 공고명 : 「식품위생법」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
- 공고기간 : 2026. 7. 7. ~ 2026. 7. 21. (15일간)
- 근거법령 : 「식품위생법」 제41조제1항, 제101조제4항제1호
- 공고대상 : 1개소

업종	인허가번호	업소명	대표자	소재지	처분사유
일반음식점	20170568050	귀원호프	정○효	경북 고령군 쌍림면 대가야로 574-1	2025년 위생교육 미이수

5. 고지사항

- 가. 위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고령군청 관광진흥과 식품진흥팀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 은행 등에 납부(가상계좌 납부 가능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나.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증가산금이 부과되며,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절차에 따라 재산압류등의 조치를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.

6. 유의사항

가.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7. 문 의 : 고령군청 관광진흥과 식품진흥팀(☎ 054-950-6693)